

이해상충 방지정책

- 당사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·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수탁자산에 대하여 신의성실하게 책임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. 당사는 「내부통제규정」에서 일반적인 이해상충방지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.
- 당사는 수탁자 책임활동과 관련한 이해상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차단벽을 설치하여 회사의 중요정보가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,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.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승인·사후보고 절차를 통해 상시적으로 점검하며, 정기적인 내부통제교육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이해상충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